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297호 2013. 1. 31(목)

조 레	
○ 사천시 조례 제1027호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사천시 조례 제1028호 사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사천시 조례 제1029호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6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526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	21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13- 6호 축동구호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	23
○ 사천시 고시 제2013-1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사항 고시 -----	29
○ 사천시 고시 제2013-15호 사천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고시 -----	31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13-89호 사천시 경관계획 주민열람 공고 -----	33

회 람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 831-2215 · 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02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7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여성발전기본법」”으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2조 중 “법 및 기타”를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중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3)

제6조제2항 중 “당해정책”을 “해당정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각각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2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을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위원(지방의회 의원 제외)”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해”를 “따라”로,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한다.

제21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100인 이상의”을 “100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비공개사유”를 “비공개사유”로 한다.

제24조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각각 “범위에서”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2조를 제33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4)

제3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공포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33조를 제34조로 하고, 제34조를 제35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5조를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제36조를 제3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7조를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8조를 제39조로 하고, 제39조를 제40조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0조를 제41조로 하고, 제41조를 제42조로 각각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5)

사천시 조례 제102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7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한다.

제2조 중 “각호의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 중 “110만원이상으로”를 “경리관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분임경리관·지출원·출납원·기타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6)

사천시 조례 제102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7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여성위원의 비율은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부시장, 지역개발국장, 재난관리과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7)

장, 녹지공원과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간사)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녹지공원과 산림보호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회의 소집을 통보 받은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8)

-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10)

[별지 제1호서식]

위 축 장

○○대학교 ○○학과 교수

○ ○ ○

귀하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20 . . . ~ 20 . . .)합니다.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11)

[별지 제2호서식]

의 결 서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심의번호	심 의 안 건	심사결과
제20 -제 호	사천시 ○○(동·면) ○○리 ○○번지	
제20 -제 호	사천시 ○○(동·면) ○○리 ○○번지	

20 년 월 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12)

[별지 제3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결과

1. 심의 번호 :

2. 심의 대상지

- (1) 소 재 지 :
- (2) 지정 면적 :
- (3) 피해 유형 :
- (4) 위험 등급 :
- (5) 피해 내용 :

3. 심의 결과

심 의 항 목	심의결과		
	적정	보완	부적정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적정성			
(5)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4. 심의위원 의견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13)

[별지 제4호서식]

심 의 번 호	제20 -제 호	의 결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 .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사천시 ○○(동·면) ○○리 ○○번지)

제 출 자	사 천 시 장
제 출 년 월 일	20 . . .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14)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자료

1. 대상지 개요

- 소재지 : 사천시 ○○(동·면) ○○리 ○○번지(지목 :)
- 지정면적 : m²
- 피해유형 : 산사태, 토석류로 구분 작성
- 위험등급 : I, II, III, IV등급으로 구분 작성
- 피해우려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2. 의결 주문

3. 검토 내용(예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사유 산사태 토석류로부터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 및 주요 피해예상 내용 등을 작성
 - 산지의 지형, 지질적 특성, 주변 환경, 계류의 잠재이동 토석류, 과거 피해 이력 등 산사태 유발 인자와 구조적 취약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 지역 설명회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의견 여부 등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15)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 현장 점검계획, 지역주민 비상연락체계, 위험경보별 전달체계, 대피장소, 교육실행 내용 등을 작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 예방사업의 시급성 여부, 예방사업 공법 적용 사유 등을 작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 구역면적 설정을 어떻게 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를 작성

- 기타 사항

4. 실무 검토의견(종합의견)

-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기재

5. 참고사항 :

- 붙임 : 1. 취약지역 판정표(산사태, 토석류), 위치도 및 사진 1부.
2. 지역주민의 의견,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 1부.
3.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필요시) 1부.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16)

[붙임 1]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						
일 반 정 보	조 사 자	소 속	직	성명	연락처	
	조사일자		20 년 월 일			
	위 치	행정구역	경상남도 사천시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GPS좌표	위도(° ' "), 경도(° ' ")			
		○유역면적		ha		
인 자	Category 별 점수					
	1	2	3	4	5	점 수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	인가1~5미만	인가5~10	인가10 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	0	150	300	330	360	
황 폐 발생원	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 이하인 유역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 이상인 유역	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점 수	0	80	96	112		
계 류 내 전석 분포 비율(%)	10% 미만	10~20	20~30	30 이상		
점 수	0	10	40	18		
계류 상부 경사(°)	9 미만	9~13	14~18	19 이상		
점 수	0	10	28	54		
총 계류 길이(m)	200 미만	200~500	500 이상			
점 수	0	28	74			
계류평균 경사(°)	5 미만	5~7	8~10	11~16	16 이상	
점 수	0	16	32	48	60	
조사자의 점수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탄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	점					
종합의견						
관리방안	사방댐()개소, 계류보전()km			대피장소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17)

토석류 취약지역 위치도

토석류 발생취약지역 사진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18)

[붙임 2]

산사태 취약지역 판정표						
일 반 정 보	조 사 자	소속	직		연락처	
			성명			
	조사일자		20 년 월 일			
	위 치	행정구역	경상남도 사천시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GPS좌표		위도(° ' "), 경도(° ' ")				
	○유역면적		ha			
인 자	Category 별 점수					
	1	2	3	4	5	점수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	인가1~5 미만	인가5~10	인가10 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	0	100	200	220	240	
경사길이 (m)	50 이하	51~100	101~200	201 이상		
	0	19	36	74		
모 암	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등)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	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 수	0	5	12	19	56
경사위치	0~4/10	5~6/10	7~10/10			
점 수	0	9	26			
임 상	· 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 무입목지	·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	· 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 수	18	26	0		
사면형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		
점 수	0	5	12	23		
토심(cm)	20 이하	20~100	101 이상			
점 수	0	7	21			
경사도(°)	25 이하	26~40	41 이상			
점 수	16	9	0			
조사자의 점수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탄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지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	점				
종합의견						
관리방안	산지사방()ha		대피장소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19)

산사태 취약지역 위치도

산사태 발생취약지역 사진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20)

[붙임 3]

산사태 취약지역 등급	점 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36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240~36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80~240점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80점 이하

[붙임 4]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	점 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54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360~54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120~360점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120점 이하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21)

규 칙

사천시 규칙 제526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7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자진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우대승진 임용 및 7급 또는 기능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의 연장

제13조제2항 중 “3명”을 “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를 “3분의 2 이상을 민간전문가로”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22)

제20조제1항제1호 중 “조무직렬, 방호직렬”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별표 6, 별표 8, 별표 9, 별표 13, 별표 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23)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3-6호

축동구호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축동구호농공단지계획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0일

사 천 시 장

□ 축동구호농공단지계획

1. 산업단지 명칭 (변경없음)

○ 축동구호농공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 토지소유자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내 유희 인력 취업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당초)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191번지 일원

(변경)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933번지 일원

○ 면 적 : 106,424.9m²

※ 변경사유 : 지적공부정리에 따른 새 지번 부여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24)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 개발기간 : (당초)2008. 9. ~ 2012. 12. 31.

(변경)2008. 9. ~ 2013. 12. 31.

○ 개발방법 : 민간개발

※ 변경사유 : 농공단지계획 변경(2공구 준공 및 유치업종 변경) 등 행정 절차 이행

5. 주요 유치업종 (변경없음)

○ 금속가공제품(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26)

기타기계 및 장비(29), 자동차 및 트레일러(30), 가구(32), 기타 제품(33)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7층

○ 성 명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이사 김대성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9.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변경없음)

11. 에너지사용계획 - 해당없음

1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변경없음)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14.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15.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변경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25)

16.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7. 사업시행지역에 존치 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해당없음
18.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 이주 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없음)
19.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명세서 및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변경없음)
21.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 - 해당없음
22.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변경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26)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93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축동구호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수도공급설비, 수질오염방지시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도시계획도로

┌ 중로2-37호선 : L=458m, B=15.0m

└ 중로3-24호선 : L=176m, B=12.0m

※ 노선번호는 재정비[사천시 고시 제2011-89(2011.08.04)호] 시 변경

나. 녹 지 : A=3,896.8㎡, A=5,845.6㎡

다. 수도공급설비 : A=2,413.4㎡

라. 수질오염방지시설 : A=2,636.4㎡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7층

나. 성 명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이사 김대성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착 수 일 : 2008. 09. 01.

나. 준공예정일 ┌ 당초 : 2012. 12. 31.

└ 변경 : 2013. 12. 31.

※ 변경사유 : 농공단지계획 변경(2공구 준공 및 유치업종 변경) 등 행
정절차 이행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27)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8. 관계도서 : 게재생략 (사천시청 공단조성과에 비치)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28)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축동면 구호리	931	공	5,845.6	5,845.6		사천시			
2	축동면 구호리	936	잡	2,636.4	2,636.4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 탁주식회사			
3	축동면 구호리	939	도	10,004. 5	10,004. 5		사천시			
4	축동면 구호리	940	도	70.1	70.1		사천시			
5	축동면 구호리	941	공	3,896.8	3,896.8		사천시			
6	축동면 구호리	945	구	625.3	38.3		사천시			
7	축동면 구호리	946	수	1,653.2	1,653.2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 탁주식회사			
8	축동면 구호리	947	공	721.9	721.9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 탁주식회사			
합 계				25,453. 8	24,866. 8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29)

사천시 고시 제2013-1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 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3일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12-2호
2. 점용·사용 승인년월일 : 2012년 7월 23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갯벌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의 기존도로에 해수유통구를 설치하여 자연생태계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갯벌복원사업지 주변에 부대시설 설치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205-8번지선 공유수면
5. 공사완료내역
 - PE부잔교(L=50m, B=2.18m), 도교(L=10m, B=1m), 데크 등(L=5m, B=5m) 설치
6. 공사기간
 - 2012년 7월 27일 ~ 2012년 12월 27일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30)

7. 점용·사용 승인(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8. 공사완료 신고 수리일자 : 2013. 1. 23.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31)

사천시 고시 제 2013- 15호

사천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13. 1. 24
2. 장 소 : 사천시 홈페이지, 시 공보, 전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변경(세부내역 별도조서 참조)
4.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절차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동의 얻은 날로부터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결과 통보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14일 이상	주민의견수 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	---------------------------------	------------------------------	--------------------------------	--------------------------------------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민원지적과(☎831-2320~23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4일

사 천 시 장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32)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 조서

[사천시]

순번	구분	도로명		행정구역 및 도로구간		길이 (m)	폭 (m)	위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부여·변경 폐지사유	비고
				기점	종점					시작	끝		
1	도로명 변경	변경전	비토해안길	비토리 산 11-17	비토리 119-92	2,555	8	길	10	1	612	지역특색을 반영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	
		변경후	거북길	비토리 산 11-17	비토리 119-92	2,555	8	길	10	1	612		
2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	변경전	비토로	비토리 5-175	선전리 936-10	5,380	8	로	20	1	538	지역특색을 반영한 명칭으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	
		변경후	토끼로	비토리 119-93	선전리 936-10	3,160	8	로	20	1	316		
			용궁로	비토리 5-175	비토리 119-93	2,220	8	로	20	1	222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33)

공 고

사천시 공고 제 2013-89호

사천시 경관계획 주민열람 공고

「경관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경관정책 수립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천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같은 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열람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 사천시 경관계획
2.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로 부터 30일간
3. 열람방법 : 사천시 공보
4. 열람장소 : 사천시청 건축과
5. 주요내용
 - 가. 공간적 범위 : 면적 398.25km² (사천시 전지역)
 - 나.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11년, 목표연도 2020년
 - 다. 주요내용
 -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경관자원의 조사와 분석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297호(34)

- 경관계획의 기본구상 및 수립에 관한 사항
- 경관디자인 지침마련에 관한 사항
- 실행계획 및 특별과업에 관한 사항 등

6. 관련도서 : 별첨 (열람장소 비치)

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천시 건축과 건축디자인담당(☎055-831-32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